2025-1학기 비전임교원 2차 채용공고

채용직종 · 분야 · 인원

- □ 채용직종·분야·인원: 「<u>강사, 초빙교원 채용분야 및 인원</u>」 참조 (2쪽)
- □ 채용직종 및 분야 선택 시 유의사항
 - 직종(강사, 초빙교원)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하나의 직종을 선택하여야 함
 - 임용소속이 다른 2개 이상 채용분야에 각각 합격한 경우 중복임용은 불가하며 하나의 소속을 선택하여야 함
 - 강사의 경우 "연구년, 보직, 휴직 대체"가 표시된 채용분야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재된 대체기간이 도래하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면직됨
 - 외부기관과의 협약(과제) 관련 초빙교원 채용분야 관련
 - 신규채용 지원자는 외부협약(과제)에 최종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임용되며, 외부협약(과제)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채용보류 내지 임용이 취소됨
 - 급여는 재원 부담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책정되고 관련 운영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등 사정변경 시 임용종료일 전에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본교에 재직 중인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은 현 직종·소속에 대한 2025.2.28.자 의원면직 조건부로 2025.3.1.자 신규임용이 가능함
 - 위 경우는 현 직종·소속에 대한 임용기간이 남아 있음(임용종료일이 2025.3.1. 이후)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에 지원하여 2025.3.1.자 신규임용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 현 직종·소속의 임용기간이 2025.2.28.자로 만료되어 당연면직되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타 대학 전임교원은 본교 강사 및 겸임교원으로 임용 불가함
 - 채용공고의 "담당 가능 과목"은 예시이므로 실제 담당할 교과목은 강의개설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한계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강의를 배정하 거나 강의배정이 없는 학기가 있을 수 있음(임용기간까지 신분은 유지되나, 강의배정이 없는 학기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

강 시	. th	요	부	UF	민	이 워	ı
\sim \sim	ΛII	\sim		VI			

7		채용	담당 가능 과목(예시)								
임 용 소속	채용분야명	세 광 인원		2025-1학기			2025-2학기		추가 임용자격조건 등	연구년, 보직, 휴직 대체	문의처
		인원	구분	교과목명	학점	구분	교과목명	학점			
보건바이오대학 산림자원학과	산림경영	1	전공	산림경영학및실습	3					- 휴직 교수 대체 (대체기간:2025.03.01. ~2025.08.31.) 6개월	850-6730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과교육학	1	전공 전공	일반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A) 일반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B)	3					- 연구년 교수 대체 (대체기간:2025.03.01. ~2025.08.31.) 6개월	850-4140

초 빙 교 원 채 용 분 야 및 인 원

임용소속	채용분야명	채용인 원	활 용목 적 및 담당업무	직급명	급여조건 등	임용기간	추가 임용자격조건 등	문의처
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초빙교원 (객원교수)	1	- 강의: 뉴로모픽의 이해 등	객원교수	강의 시 강의료 지급 (국고)	2025.03.01.~ 2026.02.28. (1년)	- 타 대학 전임교원 재직자	850-6704
글로벌경영대학 국제학부	한국어교육/ 한국어통번역	3	- 강의: 한국어읽기쓰기실제(2개 반), 한국어 말하기듣기실제(2개 반), 한국인의생활문화	초빙교수	강의 시 강의료 지급 (교비)	2025.03.01.~ 2026.02.28. (1년)		850-6010

- ※ 월 급여는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음
- ※ 월 급여가 미기재된 채용분야는 정기지급 급여가 없으며 강의 시 강의료를 지급함 (강의료 지급기준은 채용분야별로 상이함)
- ※ 급여재원이 국고인 채용분야는 외부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급여수준, 임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외부협약(과제)가 조기 종료되는 등 사전변경 시 임용종료일 전이라도 임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직 종	지 원 자 격
강 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1년 이상 강의 경력자 2. 박사학위과정 1년 이상 수료자 3. 예ㆍ체능계열 및 기타 실기분야는 석사학위 소지자 가능 4. 특정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후 업무종사경력 2년 이상인 경우 가능 (변호사, 회계사 등)
초빙교원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자 (특수한 교과목: 기술발전에 따라 학생 수강 수요가 있음에도 해당 과목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제한적인 교과목)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가. 특정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룩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자나.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자다.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상당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마. 교육 또는 연구활동을 훌륭하게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1960. 3. 1. 이후 출생자 (강사, 겸임교원에 해당) - 강사(겸임교원)는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달한 때 당연면직된다. (대구대학교 강사임용규정 제23조, 겸임교원등임용규정 제21조) 3. 채용분야별 추가 임용자격조건 충족

3 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우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성산홀 13층 교무인사팀

※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025. 2. 17.(월) 14: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기간: <u>2025. 2. 12.(수) ~ 2025. 2. 17.(월) 14:00까지</u> 접수분에 한함

*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은 지원서는 접수되지 않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1. 신규채용 지원서					
	- 첨부 양식 작성					
	2. 연구실적목록					
- 첨부 양식 작성	- 첨부 양식 작성					
고트기하	- 연구실적목록에 대한 증빙서류는 미제출					
공통사항 3. 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3. 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 출력 후 지원서와 함께 제출					
	- 학·석·박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외국박사학위신고증, 전					
	공 관련 자격·면허증,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					
	- 재직증명서는 발급일자 <u>2025.1.1.자</u> 이후 건만 인정함					

4 심사절차

단계	심사구분	배점 등	심사내용 등
1 [] [] [] [] []		P(pass)/	-채용공고에 제시한 지원자격 충족여부 심사
1단계	지원자격	F(fail)	-지원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2단계 심사 실시
	7) 7	일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일치도 심사
	기초	불일치	-심사위원 과반의 일치를 받아야 심사 통과함
OLF4J	ᆲᄀ	0 ~	-강의실적(실무경험실적) 및 잠재역량, 학문적 우수성 등 심사
2단계	전공	100점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 통과함
	머건	0 ~	-교육자적 자질 및 열정, 관련 지식수준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심사
	면접	100점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 통과함

- 면접심사는 화상면접으로 실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개강의를 실시할 수 있음 (면접심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일정은 해당 학과, 부서에서 개별 연락 예정)
- 본교 강의경력자에게는 강의경력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함
- 2단계 심사 통과자 중 상위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예정자를 선발하며, 상위 순위자의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연락두절 등 임용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다음 순위자 순으로 임용예정자를 정함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심사절차 관련 세부사항은 「대구대학교 강사신규채용지침」 및 「대구대학교 겸임교원등신규 채용지침」참조

5 임용기간 및 재임용 관련 사항

직 종	임용기간	재임용 관련 사항
강 사	임용일로부터 1년 (2025.3.1. ~ 2026.2.28.)	신규임용일 이후 휴직·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3년 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에 따름
초빙교원	"초빙교원 채용분야 및 인원"에 기재된 임용기간	- 재임용 절차 없음 - 임용기간 만료 후 신규임용절차에 따름

- <u>강사의 경우 "연구년(또는 보직, 휴직) 대체"가 표시된 채용분야는 재임용 심사 절차를 적용하지</u> 않으며, 기재된 대체기간이 도래하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면직됨
-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한국연구재단 등 타 기관과의 협약(사업, 연구과제수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채용분야별 임용기간을 반드시 확인

6 색무

직 종	책 무	강 의 시 간
강 사	학부 및 대학원에서 담당 교과목 강의를 담당	학기당 주당 6시간 이내
초빙교원	"초빙교원 채용분야 및 인원"에 기재된 활용목적 및 담당업무	학기당 주당 6시간(또는 9시간) 이내

- 실험·실습/실기과목(예체능 과목 제외)의 강의시간은 100분의 수업을 1시간으로 인정함
- 간호학과 임상실습 교과목은 3시간 실습시간을 1시간으로 인정함
- 계절제 대학원의 강의 담당시간은 학기별 한계시간(강사 6시간 등)에 포함됨
- 초빙교원은 활용목적에 따라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공고의 "담당 가능 과목"은 예시이므로 실제 담당할 교과목은 강의개설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한계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강의를 배정하거나 강의 배정이 없는 학기가 있을 수 있음(임용기간까지 신분은 유지되나, 강의배정이 없는 학기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음)

7 보수

직 종	내 용
강 사	- 본교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름 - 임용계약과 별도로 학기별 강의료 지급 계약을 체결함 -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
초빙교원	- 대학이 책정한 기준에 따라 월 급여 또는 강의료를 지급함 - 급여재원이 국고인 경우 외부기관 협약 등에 따라 책정됨

8 채용일정

기 간	내 용
2025. 2. 12.(수) ~ 17. (월) 14:00	지원서 방문 및 우편 접수 (증빙서류 출력)
2025. 2. 18.(화) ~ 19.(수)	채용심사 (지원자격/기초·전공·면접)
(예정) 2025. 2. 24.(월)	임용예정자 발표 (홈페이지)
미 정	신규임용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인사발령

- 채용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접수처로 연락하여 변경 요청하여야 함
- 면접심사는 면접심사를 실시하는 채용분야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일정은 학과, 부서에서 개별 연락

9 지원 유의사항

- 지원서 입력 전 반드시 '접수유의사항'을 확인할 것
- 지원서 접수 시 기재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등과 잘못된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심사과정에서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가 고려될 수 있음
- 타 대학 강사로 임용될 예정이거나 임용된 사람도 본교 공개채용에 지원 가능함
- 타 대학 전임교원이 지원하여 초빙교원(객원교수) 임용예정자로 결정될 경우, 본직 대학의 재직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한국연구재단 등 타 기관과의 협약 관련으로 임용될 초빙교원은 관련 사업, 연구과제가 조 기종료되는 등 사정변경 시 임용종료일 전이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안보학 분야의 지원자는 최종 국방부 적격심사를 통과하여야 임용 가능함
-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거짓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서류의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불응할 경우 임용결정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원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이 취소됨
- 합격자는 우리대학교 채용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며 개별 연락하지 않음
- 적격자가 없는 채용분야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우리대학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인사 관련 규정에 준함
- 채용서류 반환 관련 안내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 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0 문의처

- □ 채용절차 및 시스템 등 문의: 교무인사팀(053-850-5117)
- □ 담당 교과목 설명, 면접심사 일정 문의, 임용포기 접수 등: 채용분야별 문의처 참고

2025. 2.

대 구 대 학 교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전화:(053)850-5117 FAX:(053)850-5120

교육목적: 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목표: 유능한 전문직업인 배출 / 선도적 복지인력 양성 / 진취적 민주시민 육성